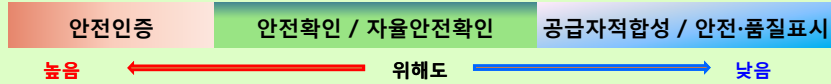


##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

국민안전 확보를 위해,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

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수준에 따라 ①**안전인증** ②**안전확인(자율안전확인)** ③**공급자적합성확인(안전·품질표시)**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



·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( '1974.1.4, 제정 ) /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( '1967.3.30, 제정 )



종수(전기용품/공산품)

## II.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)

## 전안법과 품공법 통합 배경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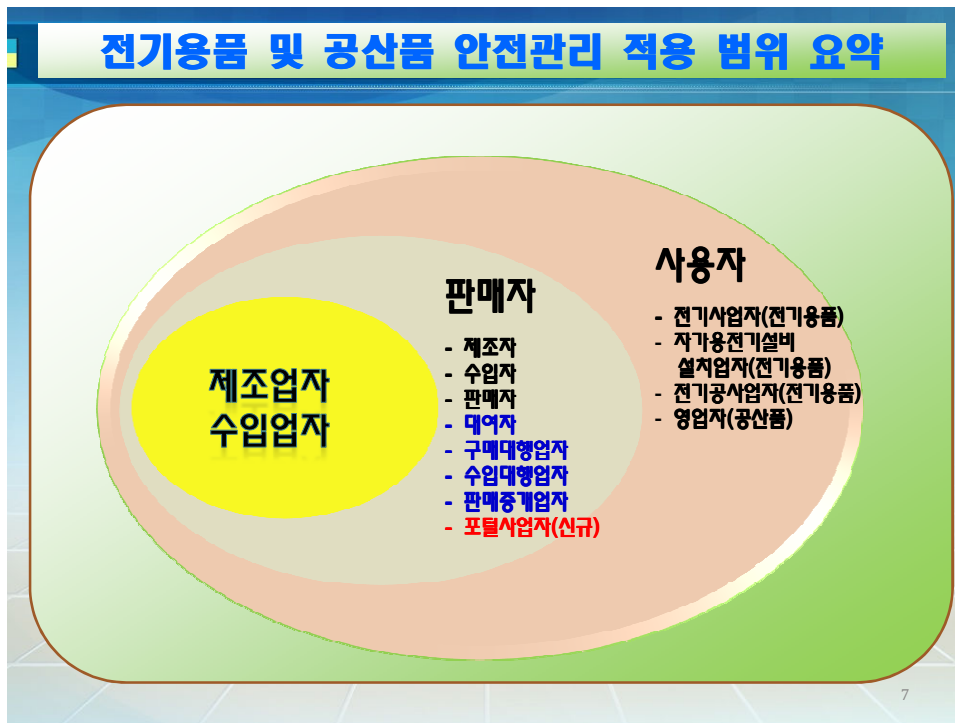
법 운영의 합리성 제고 [법 집행의 명평성, 합리성 유지]

구분	전안법	품공법
관리 단계 용어	안전인증/안전확인/ 공급자적합성확인	안전인증/자율안전확인/ 안전·품질표시
일회성 제조자 인증가능 여부	없음	있음
정기검사 주기	1년 1회	2년 1회
중개업자 규정	있음	없음
벌칙 및 과태료규정 (예)미인증 제품 처벌	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	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

##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

구분	현행	향후
제품출시전	<p><b>전기용품안전 관리법</b>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</p> <p><b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</b> 품질경영,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·품질표시</p>	<p><b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b>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</p> <p><b>산업표준화법</b>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여 관리</p> <p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17년 1월 28일 폐지</p>
제품출시후	<p><b>제품안전기본법</b> 제품 사고조사, 리콜 명령 등</p>	<p>현행과 동일</p>

6



## 1.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

**(현황 및 문제점)**

-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
- 부품변경 경우, 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

**(개선)**

-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 
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**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**

• **(현행)** 행정처분(인증취소)  
→ **(개정)**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

8

## 2.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, 현행 「전안법」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
- \*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
- 현행 「품공법」은 수입업자가 **일정수량만 제조·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**

### (개선)

-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**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**

9

## 3.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관리 非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, 안전인증 **[관련근거 :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(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)]**
- 예로, “(직류형)LED램프” 및 “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” 인증 시 안전 기준 **적용 혼란을 야기하면서 임의인증 제도 문제점 발생**
- \*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# (개선)

-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근거 삭제
- \*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
- \* 일부제품(송강기류)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성검증에 문제되지 않도록 논의 중

10

## 4.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치화 필요
- 현행 「전안법」에서는 매년 1회 실시
- 현행 「품공법」에서는 2년에 1회 실시 \* 「어린이제품안전법」도 2년에 1회

### (개선)

-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
- \* **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**

11

## 5.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현행 「전안법」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
- '14년 운용요령(고시)에서 개선하였으나,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,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함

### (개선)

-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하도록 개선
- \* (현행) 제품 + 포장 → (개정) 제품 또는 포장(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)
- \* **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**

12

## 6.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현행 「전안법」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, **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**,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# (개선)

-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,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(위반시 과태료 500만원)

13

## 7.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현재,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, **통신판매 중개자(예, 옥션 등)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**

- \* 통신판매중개업자, 구매대행·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, 다만,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
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\*「어린이제품안전법」에는 규정있음

### (개선)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①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, ②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, ③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(전기용품 :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,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)

14

## 8.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확인시험기관(또는 안전인증기관)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, 제조업자는 **시험기관의 업무정지**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

### (개선)

-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(3억원 이하)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

15

## 9.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(5년~10년)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, 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시행( '11.2.5)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

○(현행) 안전확인 유효기간(공산품 5년, 전기용품 5년~10년)

→ (개정)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

16



## 10.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
-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

### (개선)

-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**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** 규정을 마련

17

## 11.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
-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'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' 도입(12년) 되었지만, 시험없이 임의로 KC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생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# (개선)

-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**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**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**신고하도록 규정(위반시 과태료 500만원)**
  - \* 대상 제품정보만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등록하게 하여 업계불편은 최소화하고 등록된 제품정보를 통해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등에 유효하게 활용
  - \* 전기용품에 한하며, 공산품은 해당 없음

18

## 12. 기타 벌칙 규정 정비

**(현황 및 문제점)**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,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

**(개선)**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,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

### ① 벌칙 규정 신설

- 안전인증을 받은 후,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)
-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(500만원 이하 과태료)

### ② 벌칙 규정 일치화

예시)

-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 
(전기용품: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, 공산품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
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)
-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 
(전기용품: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, 공산품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
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)

19

## Ⅲ. 향후 추진 계획

(’16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)

20

## 향후 추진 계획

- 시행령(안), 시행규칙(안) 마련('16. 1~3월)
- 관련 고시(운용요령)안 마련 ('16. 3월)
- 하위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 ('16. 2~5월) \*전문가검토, 설명회 등
- 하위법령(안) 입법예고 ('16. 5~7월)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('16. 8~11월)
- 하위법령 공포('16. 12월) 및 시행('17. 1. 28)

21

## IV.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사항

22

## 1.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

<법을 제명 및 용어 정리>

연 행 「 <b>품공법</b> 」	업법 개정안
<p>「품질경영 및 <b>공산품</b> 안전관리법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</li> <li>• 안전인증, <b>자율</b>안전확인, <b>안전·품질표시</b></li> </ul>	<p>「전기용품 및 <b>생활용품</b> 안전관리법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위주로 안전관리</li> <li>• 품질경영 : 「산업표준화법」으로 이관</li> <li>• 안전인증, 안전확인, <b>공급자적합성확인</b></li> </ul>

<제품의 표시방법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행규칙 : 안전관리대상공산품</li> <li>• 개별 안전기준: 제품 및 포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포장 (9조, 18조, 25조)</li> </ul>
--	---

## 2. 인증대상제품의 변경신고 의무 등

<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변경신고 의무>

연 행 「 <b>품공법</b> 」	업법 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안전인증대상공산품</b>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(14조)</li> <li>• 위반 시 <b>500만원</b> 이하의 과태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<b>변경인증</b>을 받아야 함 (5조)</li> <li>• 위반 시 <b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</b> 이하의 벌금</li> </ul>

<안전확인대상제품의 유효기간 폐지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자율안전확인신고</b>의 유효기간은 <b>5년</b>으로 하되,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고 유효기간 <b>폐지</b></li> </ul>
---	---

<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위반 시 벌칙강화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고 위반 시 <b>1년</b> 이하의 징역 또는 <b>1천만원</b>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고 위반 시 <b>3년</b> 이하의 징역 또는 <b>3천만원</b> 이하의 벌금</li> </ul>
--	--

### 3.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

현행 「품공법」	합법 개정안 (공산물 분야)
(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을 판매, 대여, 판매중개, 구매대행,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(9조, 18조, 25조) <b>p.17참조</b></li> </ul>
(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전인증,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판매중개업자,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,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<u>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</u> (10조, 19조, 26조) <b>p.17참조</b></li> <li>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/li> </ul>

### 4.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효력상실제도 도입 등

현행 「품공법」	합법 개정안
(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, <b>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</b>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할 수 있음 (20조)</li> </ul>

### 5.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 서류 비치의 의무

현행 「품공법」	합법 개정안
(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(23조)</li> <li>•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/li> </ul>

27

## V. 현행 품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추진

28

## <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내용[합법에 반영 예정]>

### 1.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(제8조,제9조,제19조)

- 기업이 자신이 제조·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관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화

### 2.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

- 공산품제조 유통 Trend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품목 조정

#### ① 신규 지정(4품목)

- 야외 운동기구(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),
- 인테리어 필름, 스포츠용 고글, 난방용 텐트(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)

#### ② 품목 삭제(4품목)

- 자동차용 안전유리, 자동차용 정지표시판(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품목 이관)
- 온열시트 (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찜질기」 등에 포함하여 관리)
- 화장비누 (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, 이중규제 해소)

\*\* 입법예고 ('16.2.18~'4.17), 공포예정('16.6.30), 시행(7.1일) e-mail : consumer1@korea.kr

29

#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

국가기술표준원 : 043-870-5441(전기용품), 043-870-5451(생활용품)
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: 031-428-8401(전기용품), 031-428-7345(생활용품)

한국산업기술시험원: 02-860-1366(전기용품, 생활용품)
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: 02-2164-1413(전기용품), 02-2164-1412(생활용품)

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: 02-2102-2627(생활용품)

한국의료시험연구원 : 031-596-5781 (생활용품)

FITI시험연구원 : 02-3299-8001 (생활용품)

KOTITI시험연구원 : 02-3451-7442 (생활용품)

한국제품안전협회 : 02-890-8300

30

